

[상표분쟁]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: 특허

법원 2019. 1. 24. 선고 2018허6801 판결



무효심판 대상 등록상표	선등록서비스표 2	선등록서비스표 1
EVERKO	ebaco	에바코

특허심판원 심결: 유사, 등록무효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(심결취소사유)

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.

(1)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그 표장의 두 번째 음절 모음의 발음이 'ㄴ'과 'ㄷ'로 차이가 있는바, 이러한 모음의 발음 구분은 비교적 확실하게 구분이 가능한 것으로서 호칭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.

(2) 설령 호칭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,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/지정서비스업의 실질적인 수요자는 단순한 일반 수요자가 아니라 의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단순히 호칭에만 의존하여 거래하지 않고 실제 제품이나 상표를 보면서 거래한다는 점, 현대의 상품거래에서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외관 등 시각적인 요소에 주로 의존하여 상표 내지 상품의 출처를 구분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,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선등록상표들은 거래에 있어 호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외관과 관념까지 종합적으로 관찰되는 것이므로 그 표장들이 함께 사용되더라도 거래자들에게 출처의 오인·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없어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.

특허법원 판결: 유사, 등록무효

특허법원 판결요지

EVERKO

이 사건 등록상표 ' '는 영문 대문자로 구성된 표장이고, 선등

에바코

록상표 1 ' '는 한글로 구성된 표장이며, 선등록상표 2 ' '

ebaco

'는 영문 소문자로 구성된 표장으로서, 이들 표장은 전체적인 외관이 서로 다르다.

이 사건 등록상표 'EVERKO'는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,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의 영어 발음 습관에 의할 때 한글 '에버코' 내지 '에바코' 정도로 발음될 수 있다.

이와 대비되는 선등록상표 1 '에바코' 및 선등록상표 2 'ebaco'도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, '에바코'로 발음될 것으로 보인다.

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서로 관념을 대비할 수는 없지만, 이 사건 등록상표가 '에바코'로 발음될 경우 선등록상표들과 그 호칭이 서로 동일하고, '에버코'로 발음될 경우에도 '에○코'의 3개 음절 중 2개의 음절이 동일하고, 두 번째 음절도 '버'과 '바'로 초성은 동일한 상태에서 모음 'ㅓ'와 'ㅏ'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으로서 그 차이가 미세하여 서로 유사하게 청감되므로, 결국 이들 상표는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.

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비록 서로 외관이 상이하고 그 관념을 대비할 수 없
기는 하지만,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'에바코'로 발음될 경우 선등록상표
들과 호칭이 동일하고, '에버코'로 발음될 경우에도 선등록상표들과 호칭이 유사한 점, **문
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점**
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/지정서비스업과 동일·유사
한 상품/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/서비스업의
출처에 관하여 오인·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,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
은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봄이 상당하다.

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은 모두 의료기기 관련 제품이라는
점에서 일반 거래의 통념상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해당한다

첨부: 특허법원 2019. 1. 24. 선고 2018허6801 판결

변리사24년/변호사16년, 특허심판소송, 민형사소송, 손해배상, One-Stop Service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